

융합교육과정 운영규정

제정 2020.09.0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학칙 제27조의5(융합교육과정)에 의거 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융합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,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융합교육과정이란 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개발·개편한 교육과정을 말한다.

제4조(편성원칙) ① 융합교육과정은 학과에서 [별표1]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

② 융합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기존 학과 개설 교과목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하게 교과목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.

③ 융합교육과정은 각 학과별 교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.

④ 융합교육과정은 학칙 및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에 의거하여 편성한다.

⑤ 융합교육과정의 명칭은 “트랙”으로 한다.

제5조(이수) ① 융합교육과정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, 1학년 2학기, 2학년 1학기에 이수한다.

② 융합교육과정은 타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,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다.

③ 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한하여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에서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.

④ 융합교육과정은 1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[별표2]의 이수증을 발급한다.

제6조(기타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융합교육과정 개발 신청서

참여 학과명			개발담당 교수	○ ○ ○ (인)
			개발담당 교수	○ ○ ○ (인)
			개발담당 교수	○ ○ ○ (인)
개발 분야	융합 교육과정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
융합교육과정명 (트랙명)			인재양성유형명	
교육목표				

▶ 교육과정

학 년 도	학 기	교과목명 (영문명)	시수		학 점	수강제한학과	교과목 주관학과
			이 론	실 습			
2020	2						
2021	1						
합계		0과목	0	0	0	-	-

20 년 월 일

소속학과 전임교원	(인)	(인)	(인)
	(인)	(인)	(인)
	(인)	(인)	(인)
	(인)	(인)	(인)

국제대학교 총장 귀하

[별표 2]

제 20 - 00호

이 수 증

성 명 : 학 번 : 생년월일 :
학 과 : 학 위 명 : 졸업일자 :

교 과 목 명	과 목 번 호	학 점
---------	---------	-----

계

트 랙 명 : 000000트랙
운영기간 : 20 년 00월 00일 ~ 20 년 00월 00일

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20 년 00월 00일

국 제 대 학 교 총 장